

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. 5. 27 선고 2019가단223596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재판경과

부산지방법원 2022. 2. 16 선고 2021나52686 판결

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. 5. 27 선고 2019가단223596 판결

전 문

원 고 A자산관리회사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린

담당변호사 박윤정

피 고 B

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진, 김지혜

변 론 종 결 2021. 1. 28.

판 결 선 고 2021. 5. 27.

주 문

1.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9. 8. 5. 체결된 채권양수도계약을 취소한다.
2. 피고는 주식회사 D에게 제1항 기재 채권양수도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.
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원고의 주식회사 C(이하 'C'라 한다)에 대한 채권

- 1) 원고가 C 등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머619767 조정신청 사건에서 '피신청인들(C 등)은 연대하여 신청인(원고)에게 63,489,909,192원 및 이에 대한 2018. 9. 14.부터 2019. 6. 30.까지 연 6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2019. 6. 30.까지 지급한다. 피신청인이 위 지급기일까지 위 돈을 다 지급하지 않으면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15%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.'라는 내용의 2018. 12. 10.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졌고,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.
- 2) 원고는 2019. 9. 26. 기준 C를 포함한 연대채무자들에 대하여 22,818,690,718원(= 원금 6,859,706,666원 + 지연손해금 15,908,149,550원)의 잔존채권을 가지고 있다.

나. C의 주식회사 D(이하 'D'라 한다)에 대한 손해배상채권

C는 D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15가합32516호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, 위 사건의 항소심[부산고등법원(창원) 2018나12141]에서 2019. 8. 5. '피고(D)는 원고(C)에게 2019. 8. 20.까지 200,000,000원을 지급한다. 만일 피고가 이를 지체할 경우에는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2019. 8. 21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.'라는

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여 확정되었다(위 조정조서에 기한 채권을 이하 ‘이 사건 손해배상채권’이라 한다).

다. C와 피고 사이의 채권양수도계약의 체결

1) C는 위 조정이 성립한 2019. 8. 5.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에 관하여 채권양수도계약(이하 ‘이 사건 채권양수도계약’이라 한다)을 체결하였고, 같은 달 7일 채무자인 D에게 채권양도통지가 송달되었다.

2) 피고는 2019. 8. 29. C의 승계인으로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고, 위 승계집행문등본이 2019. 9. 4. D에게 송달되었다.

라. 2019. 8. 5.경 C의 적극재산

1) 2019. 8. 5.경 C는 경남 김해시 E 임야 42㎡를 소유하고 있었다.

2) 2016년경 C를 피공탁자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2016년금제1225호로 5억 원이 공탁되었고, 2020. 4. 23. 원고 등 C의 채권자들에게 이자를 포함한 502,340,662원이 배당되었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6호증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),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, 이 법원의 김해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, 이 법원의 김해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,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정보화지원과(등기정보조회)에 대한 사실조회결과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판단

가. 채무자 C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양수도계약 체결 무렵 채무자 C의 적극재산 보다 소극재산이 많아 채무초과 상태였다.

채무자 C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에 관한 조정이 확정된 2019. 8. 5. 피고와 위 손해배상채권에 관하여 이 사건 채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, 이는 C의 채권자들을 해할

의사로 한 재산처분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, C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.

나. 피고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

피고는 C에 대한 채권의 변제로 이 사건 채권을 양도받은 것일 뿐,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.

살피건대, 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피고와 C 대표이사의 관계, 피고의 C에 대한 채권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, 피고가 C에게 채무 변제를 독촉하여 오던 중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에 관한 조정이 성립된 당일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은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,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의 양도로 인하여 다른 일반 채권자들의 책임재산에 부족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고,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.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.

다.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

따라서 피고와 C 사이의 이 사건 채권양수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, 피고는 위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위 채권의 채무자인 D에게 위 채권양수도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.

3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오윤경

[별지]

채권 목록

주식회사 C가 주식회사 D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채권 200,000,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. 끝.

